화요일아침예술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2011.03.01.

개정 2012.03.02.

개정 2016.03.02.

개정 2017.03.01.

개정 2019.03.04.

개정 2020.03.01.

개정 2021.09.29.

개정 2023.05.0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화요일아침예술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화요일아침예술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 2(재심 청구),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동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의 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 청구 등), 경기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의생활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인권보장의 기본원칙】

- ①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학생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 ③ 학생 인권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5조 【학교 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행복과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교사와 다른 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성별, 종교, 사상, 성적 지향, 다문화 가정, 또는 징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학교 내에서 모든 혐오 표현은 금지되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

제7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 학생의 생활교육에 대한 기준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생활교육원칙】

- ① 학생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응징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②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 ③ 생활교육은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교무부장, 학생부장, 담임교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교사, 학부모, 학생자치회 회장단 및 대의원 등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임무】

- ① 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임무를 대행하며, 본 위원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는 위원 중 호선하여사무를 주관한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능】

본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모니터링 및 협의와 조정의 기능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학생의 표창 상신 및 수여에 관한 사항
- ② 학생의 징계 제청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③ 학교폭력사건을 제외한 학생생활규정에 포함되는 제반 사항

제12조【사안설명】

① 위원회 개최 전 참석 등의 관련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후, 위원회 심의·의결 전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사고·질병 등으 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감수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 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재심의 부의】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징계권자가 부당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는지, 합당한 징계사유로 적법 절차를 거쳐 타당성 있는 징계를 다투기 위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재심을 요구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학생생활부에 제출하고,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부여할 수 있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훈계는 즉시 또는 별도시간에 지도한다.(월 3회 이상의 훈계를 받은 자는 학생자치 기구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교내봉사는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③ 사회봉사는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④ 특별교육 이수는 경기도교육청이 인정한 기관의 일정에 준한다.
- ⑤ 흡연, 음주로 인한 동일 항목 위반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장기, 학기, 학년 및 영구 퇴사의 기숙사 퇴사 징계 적용과 함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교내봉사(2회 적발 시), 사회봉사(3회 적발 시), 특별교육 이수(4회 적발 시), 출석정지(5회 이상 적발 시) 등의 징계지도를 병행한다.
- ⑥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① 퇴학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⑧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⑨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 ①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동일 지도 항목에 대한 재차 규정 위반 시 차상위 이상의 징계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① 학생상벌 규정은 기숙사 생활교육 규정과 연동하여 학생들의 재학기간 동안 누계 또는 연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방법】

학생 지도 및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 지도 및 징계 시 체벌은 금지하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 지도 및 징계 시 훈육·훈계 지도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③ 교내봉사는 수업을 받게 하거나 수업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교무부장, 담임교사, 상담교사, 관련교사 등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 ④ 사회봉사는 다음 사항을 선택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한다.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⑤ 특별교육 이수는 다음 사항 중 선택하여 이수하게 한다.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이수
 -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약물, 마약, 알코올중독치료) 학교교육의 이수
 - ©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교육 이수
 - @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육이수
 - ⑤ 상담 자원봉사,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 : 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개별 교육 이수
- ⑥ 교육감은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 기간 동안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특별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⑦ 퇴학 처분은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으로 결정한다.
 -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으로 전학
 - © 직업 알선(중퇴생 대책 협의회 활용)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제1호, 제2호 이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기준】

징계 기준은 [표 1]과 같다.

제17조【심의절차】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② 교내봉사부터 퇴학 처분에 해당되는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 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직원회의 에 회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18조【생활교육 내용 통보】

생활교육 결과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이의제기,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등의 생활교육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생활교육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19조【생활교육 대상 학생 고사 응시】

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기간은 처벌기간에 서 제외할 수 있다.

제20조【생활교육 감경 및 가중】

-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 교사 및 학년부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감경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가중하여 생활교육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생활교육 감경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담임교사 또는 담당(지도)교사의 감경 의견서 제출
 - □ 학교장 승인
 - ◌ 해당 기간 생활교육 감경 후 학생 및 보호자의 생활교육 해제 서약서 제출

제21조【생활교육 해제】

생활교육 해제는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부장이 담임교사, 교감과 협의하고 생활교육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학생과 보호자의 생활교육 해제 서약서를 받은 후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2조【기타규정】

- ① 본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징계 양정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징계 양정을 증감할 수 있다.
- ②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

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3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 개정

제23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2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 상 및 징계, 징계 이외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 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26조【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교사위원 3명. 학부모위원 2명. 학생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학년 학부모 대표를 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재직 교원의 과반수
- ©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②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절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승인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0조 【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31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3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장 학생용의복장

제33조【복장】

- ① 복장은 단정한 사복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실내화를 사용할 수 있고, 운동화를 권장한다.

제34조【【용모】

① 두발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단정한 머리를 권장한다.

- ② 인위적인 머리 색깔의 변경은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새치 또는 치료목적 등)는 예외로 한다.
- ③ 파마 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번개머리, 고슴도치, 닭볏 머리) 등 인위적인 머리 모양 변경은 금지한다.
- ④ 손톱은 단정하게 깎아야 하고, 색안경 착용을 금지한다.
- ⑤ 자외선 차단을 위한 선크림을 제외한 컬러로션, BB크림, 파우더나 파운데이션 기능이 있는 제품,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하이라이터, 볼터치, 색조 립스틱, 반짝이 기능 립스틱을 사용한 화장 및 기타 색조 화장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 ⑥ 눈썹 손질 및 모조눈썹(붙임눈썹)을 붙일 수 없고, 피어싱과 컬러 렌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 ① 고대기 등 머리 손질용 전열기구를 교내에 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 고대기 사용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⑧ 신종 액세서리나 변종 스타일 등장 시 금지사항 목록에 추가한다.

5장 학생자치회

제35조【명칭】

본 회는 화요일아침예술학교 학생자치회치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36조【목적】

본 회는 본교의 교육목적과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의 전통 및 학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이거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38조 【권리 및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학생자치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9조【지도기구】

본 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학생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와 각 학년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0조【활동】

본 회의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② 정서 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④ 각종 봉사활동
- ⑤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 ⑥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①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활동 중 지도위원회 및 학생생활부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⑧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생활부는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 【기구】

본 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를 둔다.

제42조 【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43조【구성】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부장 3인의 임원을 둔다.(필요에 따라 부회 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① 회장은 3학년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 ② 부회장은 2학년 학급자치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 ③ 서기는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2학년 중에서 학생자치회 담당교사가 지명한다.

제44조【부서】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제45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서기는 학생자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④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필요한 경우 차장을 둘 수 있다.

제46조【임원 선출 및 자격】

- ① 회장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단, 본교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지도를 받은 자는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 ②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은 회장단 및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자치회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자문을 구할수 있으며, 본교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지도를 받은 자는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③ 임원선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⑤ 통솔능력이 있는 자
 - ⓒ 본교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 © 이외의 세부 세칙은 학생자치회 지도 기구인 지도위원회의 협의·의결을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며, 매년 3월 중에 선출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또한 자진 사퇴, 학적 변동 등에 의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출 방식을 결정, 후임자를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48조【구성】

대의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부회장, 각 학급의 지치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이 된다.

제49조【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자치회 관련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과보고의 승인
- ② 학생자치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④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0조【회의】

-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 운영위원회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대의원회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
- 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이 된다.

제52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자치회의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학생자치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③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④ 대의원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53조【회의】

-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또는 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54조【학급자치회 구성】

학급회는 자치회장 1인, 자치부회장 1인, 서기 1인으로 구성한다. 서기는 부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55조 【학급자치회 임원 선출 및 자격】

- ① 회장, 부회장은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하며 담임교사의 제청에 따라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본교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 © 급우 간 신임이 두터우며 통솔력이 있는 자
- ③ 회장, 부회장의 선거는 3월, 8월(또는 9월) 중 지정된 기간에 실시한다.
- ④ 회장, 부회장의 임기 및 학급회 조직은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선출, 구성하여 운영한다. 회장, 부회장은 재출마가 가능하나, 임기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지도를받은 경우 그 직을 면한다.
- ⑤ 회장, 부회장에 임명된 자가 전출, 자퇴,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지도 등의 사유로임기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입회 하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로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6조 【학급자치회 부서의 임무】

- ① 학급 회장 : 학급 통솔, 출석 파악, 교과 시간 및 집회 시 인원 보고, 담임의 지시 사항 전달. 교실 환경, 및 학습 분위기 조성, 대의원회 활동
- ② 부회장 : 회장 유고 시 임무 대행
- ③ 서기 : 학급회 회의록 및 학급 일지를 작성한다.
- ④ 임무는 학생자치회운영 규정 제47조에 준한다.

제57조【지도위원회 구성】

- ① 학생자치의 지도는 지도위원회에서 한다.
- ② 지도위원회는 교무부장을 위원장으로, 학생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와 각 학년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8조【지도위원회 기능】

- ①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 학생자치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 학생자치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②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 ◎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60조 제1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59조【선거】

학생자치회 정, 부회장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60조【자격】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재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1조【절차】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세칙에 의한다.

단. 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선으로 인정한다.

제62조【선거일】

- ① 학생자치회 정, 부회장 선거는 매년 3월 중에 실시한다.
- ② 직선이 불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사항
 - © 입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학생부장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당선으로 인정한다.

제63조【선거관리】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①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 위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현 장이 된다.(필요시 학생자치회 업무 담당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에 관계하는 자는 정, 부회장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생활부 지도교사의 지침과 지도에 따라 선거관련 제반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권한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02일부터 제정・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3년 3월 02일부터 개정·적용한다.
-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02일부터 개정·적용한다.
- 4. 본 규정은 2017년 3월 01일부터 개정・적용한다.
- 5. 본 규정은 2019년 3월 04일부터 개정·적용한다.
- 6. 본 규정은 2020년 3월 01일부터 개정·적용한다.
- 7. 본 규정은 2021년 9월 29일부터 개정·적용한다.
- 8. 본 규정은 2023년 5월 01일부터 개정·적용한다.

[丑 1]

생활교육 구분

구					징	계		
· 분	항	내 용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0	0				
	2	▶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0	0				
	3	▶ 언행이 불손한 학생	0	0				
	4	▶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0	0				
	5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0	0	0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6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월담 행위 학생	0	0				
	7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0	0
	8	▶ 학교 단체행사에 불참한 학생	0	0				
준	9	▶ 수업준비, 청소, 주번근무, 기타 학생의	0	0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10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0
법	11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0	0			
	12	▶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0	0	0	0	0
	13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0	0	0		
	14	▶ 불온문서를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0	0	0	0		
	15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0	0	0	0	0
	16	▶ 절도를 하거나, 절도에 가담한 학생		0	0	0	0	0
	17	▶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0	0				
	18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0	0				
수업	19	▶ 수업을 거부한 학생		0	0	0		
	20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0	0	0	0		
	21	▶ 시험을 거부한 학생	0	0	0	0		
	22	▶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0	0	0	0	0
	23	▶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0	0	0	0	0
근	24	▶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한 학생	0	0	0			
태		(무단결석 3일 이내)						

		징 계					
구 분 항	내 용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25	▶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0	0	0		
	학생(무단결석 3일 초과)						
26	▶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0	0	0	0	0
근 27	▶ 무단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0	0	0		
태 28	▶ 15일 이상의 무단결석을 하거나 소재가		0	0	0		
"	불분명한 학생						
29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20일 이상		0	0	0		
	인 학생						
30	▶ 흡연, 음주를 하고 귀교하거나, 흡연 또는						
	음주 관련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학생,		0	0			
	흡연 또는 음주로 1회 적발된 학생						
31	▶ 위 30항의 흡연 또는 음주 관련 규정 위반				0		
약	행위로 2회 적발된 학생						
32	▶ 위 30항의 흡연 또는 음주 관련 규정 위반					0	
	행위로 3회 적발된 학생						
물 33	▶ 위 30항의 흡연 또는 음주 관련 규정 위반					0	
	행위로 4회 적발된 학생 ▶ 이 20천이 호엄 또는 으즈 코러 그지 이비						
34	▶ 위 30항의 흡연 또는 음주 관련 규정 위반						
	행위로 5회 이상 적발되거나, 의도적, 상습적,						
35	지속적인 학생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0	0	0	0	0
26	▶ 사이버공간에서 음란물 또는 불건전한	0	0	0	0		
사 36	정보를 제작 유포한 학생						
버 37	▶ 사이버공간에서 스토킹, 언어폭력, 명예훼	0	0				
범	► 전 1 전 0 전 1 전 1 전 1 전 1 전 1 전 1 전 1 전 1						
죄 38	 ▶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한 학생	0		0	0		
39	▶ 도박을 한 학생	0	0	0			
40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0	0	0	0	
퇴 41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0	0	0			
- 期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불량한 서적(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0	0	0			
행 ⁴² 위 43	▶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시청한 학생	0	0	0			
44	▶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0	0	0	0		
45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0	0	0	0	0	

					징	계		
구분	ঠ	내 용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금	46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0				
품	47	▶ 부당하게 금품을 갹출한 학생	0	0	0	0		
집	48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0	0	0	0		
단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행	49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0	0	0	0		
위	50	▶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0	0	0	0	0	0
전 자 기 가 사용	51	▶ 휴대전화, 노트북, 넷북, 테블릿 등을 포함 한 모든 전자기기의 부적절한 사용(사용시 간대 위반, 학습과 무관한 사용 등)으로 인 한 4회차 적발·지도된 학생		0	0	0		
7]	54	▶ 동일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 중 처벌한다.		0	0	0	0	0
타	55	▶ 징계 기준 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0	0	0	0	0

[별첨 : 선거관리업무 시행규칙]

제1조【공고】

선거일은 10일 전에 공고한다.

제2조【후보자】

- ① 정, 부회장은 단일 후보로 입후보한다.
- ②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 선거권자 1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 1부
 - ⓒ 학급담임 추천서 1부
 - ② 소견발표 원고 1부(A4용지 2매 정도로 3분 스피치가 가능한 분량)
 - ◎ 선전벽보 3부
- ③ 추천자는 중복 추천할 수 없다. 단, 정회장과 부회장 후보 1명씩은 각각 별개로 추천 가능하다.
- ④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는다.
- ⑤ 입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공고해야 한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명단을 학교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이때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3조【후보자의 자격】

회장 1명은 3학년 진급 예정자 중에서, 부회장 2명 중 1명은 2학년 진급 예정자 중에서, 나머지 1명은 3학년 진급예정자 중에서 각각 입후보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제5조【선거운동】

- ① 기간 :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 ②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전 벽보 및 원고는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공약, 선거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 ④ 벽보의 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
- ⑤ 벽보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⑥ 벽보의 규격은 4절 사이즈로 하되. 4장을 초과하지 못하며 지정된 게시판 또는

장소에 한해서 게시한다.

- ⑦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인쇄물은 등사 또는 복사유인물로 하되, A4 사이즈로 그 수량은 30매 이내로 하고, 학생생활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⑧ 선거 운동은 교내에서만 하여야 하며, 수업시간, 자기주도 학습시간에 하는 것을 금지한다.
- ⑨ 후보자는 득표를 목적으로 어떤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 10 연설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연설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연설 시간은 후보 1인당 3분 이내로 제한한다.
 - ② 연설은 방송으로 한다.
 - ② 연설할 내용을 사전에 작성하여 1부를 학생생활부에 연설 2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① 당선을 목적으로 학생자치회장, 부회장의 권한을 벗어난 공약을 하였을 때에는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지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당선 무효와 함께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이외에도 사실의 허위날조, 모략중상, 악의적 인신공격, 기타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로 단정하고 당선을 무효로 하고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조【투표】

- ① 투표방법 : 투표는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 ③ 투표소의 설치 : 투표에 필요한 모든 설비는 선거 당일 1시간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소에는 각 후보당 1인씩의 투표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7조【개표】

- ① 개표는 비밀투표 실시 데이터를 취합하여 실시한다.
- ② 개표 담당 책임자는 선거관리위원이 하되,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
- ③ 투표결과는 개표가 완료된 후 1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때,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 기권표 수를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